

문화재수리업

◆ 등록기준

| 종류 | 업종 | 자본금 | 기술능력 | 사무실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|-----|
| 종합 | 보수단청업 | 2억원 이상 |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1명 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| 사무실 |
| | | |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목공(대목수)1명과 한식미장공,번와와공,화공,드잡이공,한식석공,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| |
| 전문 | 조경업 | 5천만원 이상 | [문화재수리기술자] :조경기술자 1명 이상 [문화재수리기능자] :조경공 1명 이상 | 사무실 |
| | 보존과학업 | | [문화재수리기술자] :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[문화재수리기능자] :보존처리공 1명 과 훈증공,세척공,표구공 중 1명 을 포함한 2명 이상 | |
| | 식물보호업 | | [문화재수리기술자] :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[문화재수리기능자] :식물보호공 1명 이상 | |
| | 단청공사업 | | [문화재수리기술자] :단청기술자 1명 이상 [문화재수리기능자] :화공 1명 이상 | |
| | 목공사업 | | [문화재수리기능자] :대목수 1명 포함 한식목공 2명 이상 | |
| | 석공사업 | | [문화재수리기능자] :쌓기석공 1명 포함 한식석공 2명 이상 | |
| | 번와공사업 | | [문화재수리기능자] :번와와공 2명 이상 | |
| | 미장공사업 | | [문화재수리기능자] :한식미장공 2명 이상 | |
| | 온돌공사업 | | [문화재수리기능자] :온돌공 2명 이상 | |

◆ 기술인력

※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, 신고,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.

다만,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◆ 사무실

*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, 축사, 퇴비사, 온실, 저장고등 농업,임업,축산,어업 용 건물,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◆ 신규등록 소요기간

*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증 발급